

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경상남도지사 김 두 관

인

2011년 12월 29일

경상남도 조례 제3669호

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

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9명”을 “11명”으로, “각 호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각 호의 사람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삭제한다.

- 11명 중 7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

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
2. 11명 중 4명의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소속 공무원 2명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,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)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· 조정
2.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 · 연구
3.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

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 · 의결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심사기준)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”으로, “잔여기간으로”를 “남은 임기로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제7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제1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의2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2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2조의 규정에 따른”

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”를 “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다음 사항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행하게 하기 위하여”를 “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위원회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9조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』 및 『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』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은 “도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으로 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”는 “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”로 본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